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41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 박성훈·안상훈·김성원

이인선 • 조배숙 • 이양수

김기웅 · 이헌승 · 박충권

임이자 • 고동진 • 김도읍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03%인 1025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70 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 37조6900억원에서 2021년 72조3000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143조6400억원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과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작성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령친화산업 통계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 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및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고령친화산업 통계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
	<u> </u>
	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고령
	친화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
	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통계조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산업
	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
	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u>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
	<u>여야 한다.</u>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및 통계
	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고

 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